

英祖의 義理明辯書『闡義昭鑑』 편찬과 정국변화

堯舜의 두 가지 얼굴, 탕평군주와 전제군주의 경계

김백철

전북대학교 쌀·삶·문명연구원 HK교수, 한국사학 전공
sugaine@hanmail.net

I. 머리말

II. 두 개의 논점: 탕평인가? 봉당인가?

III. 전환점: 을해옥사, 『闡義昭鑑』에 담기다

IV. 조선 堯舜의 탄생: 朋黨을 넘어서서

V. 맺음말

I. 머리말

영조는 탕평군주의 위상을 확립하는 방법의 일환으로서 문물제도의 정비를 대대적으로 단행하였다. 이 시기 방대한 분량의 서적이 국가 주도로 간행되었으며, 이 중에는 국왕 자신의 입장을 대변하는 서적들도 다수를 이루었다.¹⁾ 특히 영조는 각종 御製書들을 간행하여 심지어 경연에서 자신의 책을 읽는 등 서적정책에 적극적으로 간여하였다.²⁾ 뿐만 아니라, 역도들을 단죄한 이후에도 『戡亂錄』이나 『闡義昭鑑』 등을 편찬하여, 그 경과를 中外에 알리고자 하였다.³⁾ 이는 이제 국왕도 출판을 통해서 자신의 입지를 명확히 하고자 한다는 점에도 흥미로운 경향이 아닐 수 없다.

영조는 즉위과정에서 수차례의 환국과 변란을 경험하여 탕평군주로서 자신의 위상을 정립하여 정통성을 천명하는 데 수십 년의 세월이 소요되었다. 이 과정에서 고도의 인내심을 발휘하여 한 걸음 한 걸음을 점진적으로 내딛어 결국 권위를 회복하기에 이른다.

그러나 영조는 재위 30년대에 접어들면서 더 이상 인내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 이러한 변화는 을해옥사를 기점으로 나타나는 현상이었다. 대규모 討逆 후 국왕은 그 어느 때보다도 단호해지기 시작하고, 신료들의 諫言은 거의 무위로 돌아가는 듯하다. 바로 이러한 변화의 과정에 을해옥사의 경과를 정리한 『闡義昭鑑』이 있었다. 따라서 영조 연간 정국변화의 주요 계기가 되는 『친의소감』 편찬 전후 국왕의 행보에 주목해볼 필요가 있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관점에서 영조 연간 당대 군주상의 변화과정을 살펴보고자 한다.

II. 두 개의 논점: 탕평인가? 봉당인가?

朋黨정치는 宣祖代 이래 공인되어오다가 그 생명력을 다하고 英祖代에

1) 박광용, 「영조대 탕평정국과 왕정체제의 정비」, 『한국사 32: 조선후기의 정치』(국사편찬위원회, 1997); 우경섭, 「영조 전반기의 서적정책」, 『규장각』 24(2001); 이정민, 「영조 어제서의 편찬과 의의」, 『한국사론』 51(2005).

2) 『英祖實錄』 22년 3월 甲午; 『英祖實錄』 32년 1월 丁丑; 『英祖實錄』 51년 11월 癸巳.

3) 김백철, 「영조대 국왕의리명변서의 편찬과 의미」, 『규장각 소장 왕실자료 해제·해설집』 4(서울대 규장각, 2005).

이르러서 亡國의 원인으로 규정되었다.⁴⁾ 이제 공식적으로는 黨論을 주장할 수는 없게 되었다. 하지만 탕평을 표방한다고 해서 곧바로 붕당시대의 의식구조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었다. 신료들은 전통적인 붕당의 의리를 매개로 하는 정견을 표방해나갔으며, 이를 국왕 영조는 어떻게든 군주주도의 탕평정국으로 바꾸고자 고심하였다. 두 가지의 상반되는 논점은 영조의 탕평이 약 30여 년 이상 추진된 이후에야 한 곳으로 귀착될 수 있었다. 여기에서는 2개의 논점이 하나로 귀결되기 전까지의 과정을 검토해보고자 한다.

국왕 영조는 어째서 탕평정치를 추진한 것일까? 여기에는 영조의 즉위과정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이복형이었던 景宗이 불과 재위 4년 만에 昇遐하고 보위를 물려받게 되었다. 이는 젊은 왕이 단명했다는 사실 외에도 전후의 정치적 맥락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다.

먼저, 경종이 즉위한 후 노론 대신들은 노골적으로 경종을 꺾박한 정황들이 다수 확인된다. 젊은 군왕이 즉위한 지 불과 몇 달이 되지 않아 後嗣가 없다는 이유로 아우인 延祜君(영조를 다음 보위를 계승할 왕세제로 책봉하자고 주장하였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관철시켰다.⁵⁾ 아울러 노론 대신들은 여기서 만족하지 않았다. 왕세제 책봉에 이어 몇 달 후에는 代理聽政을 주장하기에 이르렀다. 이마저도 경종은 가납하고자 하는 듯한 자세를 취하였다.⁶⁾

그러나 노론의 행각이 中外에 지지를 얻지 못하자, 소론은 매우 적극적으로 움직여서 신축·임인년(1721-1722) 옥사를 일으켜 노론을 대거 숙청하였다.⁷⁾ 이때 延祜君조차 연루되어 옥안에 이름을 남기게 되었다. 역모의 처결과정에서 경종은 전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의 단호한 처결을 취하였고 동시에 연잉군 보호에 盡力하였다. 이로써 경종의 치세는 확립되는 듯하였으나, 한 해가 흘러 경종은 승하하였고 영조는 왕위를 물려받게 되었다.⁸⁾

4) 『英祖實錄』 7년 11월 辛未.

5) 『景宗實錄』 원년 8월 戊寅.

6) 『景宗實錄』 원년 10월 丁卯.

7) 『景宗實錄』 2년 9월 癸卯.

8) 왕위계승 과정에서 각 당론의 입지는 浮沈을 반복해야 했다. 각 당에서는 국왕만이 항상 승리자로 표현되면서 자당의 의리가 불분명해지는 상황을 납득하기 어려웠다. 특히 建儲代理의 문제로 첨예하게 대립하는 상황에서 일어난 신임옥사에서 노론 4대신 金昌集, 李頤命, 李健命, 趙泰采 등이 모두 죽음에 물러게 되었다. 이를 주도한 소론

영조는 즉위초 소론 峻論과 緩論의 도움을 받아 집권기반을 마련할 수 있었다.⁹⁾ 또 노론-소론 간 첨예한 대립 중에도 영조의 즉위를 도왔던 소론 이광좌·조태억 등이 壬寅獄事의 주역이던 金一鏡을 단죄하는 데 큰 역할을 하였다.¹⁰⁾ 즉위를 도운 소론들은 자신들과 急少들을 분리시켜 나갔다. 하지만 소론 義理의 一角이 무너지면서 노론의 집요한 파상공세가 시작되었고, 한번 명분에서 무너진 소론들은 실각하게 되었다.¹¹⁾

영조 원년(1725) 을사환국이 단행되면서 노론 4대신이 복관되고 노론의 명분은 반석 위에 올라 선 듯하였다.¹²⁾ 그러나 노론의 지지를 받아 즉위했기에 擇君의 代價는 결코 가볍지 않았다. 노론정권이 들어선 이후 老論 山林 閔鎮遠, 鄭澮 등은 수개월에 걸친 庭請을 하며 소론의 토벌을 주청하였다.¹³⁾ 또한 신축-임인년 옥사로 제거된 노론의 신원과 당시 집권당에 대한 복수를 집요하게 요구하였다.¹⁴⁾

하지만 국왕은 명백히 반대하였다.¹⁵⁾ 한 봉당의 영수가 아니라 모든 봉당을 초월하는 국왕이기 위해서는 一黨의 논리만을 충으로 채택할 수 없었다. 이제 소론을 잘 끌어안아야 朝鮮의 진정한 주인이 될 수

5대신 趙泰壽, 李光佐, 崔錫恒, 劉鳳輝, 趙泰億 등과는 불구대천의 원수로 여겨졌다. 그래서 각 당은 신축임인년의 논의를 주도했던 주요 대신들에 대한 처벌 내지는 평가 여부를 두고 약 50여 년간 쟁투를 벌이게 된다.

9) 소론 준론 이광좌는 경종에게서 왕세제를 보필할 것을 명받아 영조의 즉위과정 전반을 세심하게 돌보았으며, 아울러 경종의 장례절차를 마무리하는 데 온 힘을 기울였다. 국장을 마치면서 본격적인 노론의 탄핵으로 자리에 물러났으나 그동안의 안정적인 국정운영으로 영조의 신임이 두터웠다. 영조 전반 탕평을 이끄는 소론 완론계 신료들도 대부분 경종에 의해 왕세제숙료로 임명되었기에 영조와 인연이 깊었던 인물들이었으며, 이들에게 경종과 영조에 대한 충성은 하나로 이해되었다. 『景宗實錄』 2년 3월 庚子; 『英祖實錄』 즉위년 8월 庚子; 『英祖實錄』 즉위년 11월 己未; 『英祖實錄』 즉위년 11월 甲子.

10) 『英祖實錄』 즉위년 11월 己未; 『英祖實錄』 즉위년 11월 庚申.

11) 정만조, 「영조대 초반의 탕평책과 탕평과의 활동: 탕평기반의 성립에 이르기까지」, 『진단학보』 56(1983), 39쪽.

12) 영조 원년 1월부터 시작된 노론계 인사 기용은 3월을 정점으로 노론 4대신의 관직이 회복되면서 환국이 종결되었다. 『英祖實錄』 원년 1월 辛亥; 『英祖實錄』 원년 1월 壬戌; 『英祖實錄』 원년 2월 庚午; 『英祖實錄』 원년 3월 庚子; 『英祖實錄』 원년 3월 辛丑.

13) 노론계의 소론 토벌 주장은 百官의 庭請이라는 집단행동으로까지 나타나서 영조 즉위년(1724) 12월부터 영조 원년(1725) 7월까지 장작 8개월간에 걸쳐 수차례 이루어졌다. 『英祖實錄』 즉위년 12월 己卯; 『英祖實錄』 원년 7월 辛丑.

14) 『英祖實錄』 원년 4월 己巳.

15) 영조 3년(1727)에 노론계 인사 100여 명을 파면하는 조치를 단행하는 정미환국으로 결국 최종 국왕의 거부 의사가 타진될 때까지 지속되었다. 『英祖實錄』 원년 3월 丙寅; 『英祖實錄』 3년 7월 己未.

있었으며, 역으로 이들이 있어야 노론의 일방적인 독주와 무리한 요구를 견제할 수 있었다. 영조 3년(1727) 노론의 지지를 받았던 국왕이 丁未換局을 단행하여 소론 일당정권을 수립하였다.¹⁶⁾ 노론 4대신의 관작을 다시 추탈하고 소론의 義理를 재확립시키기에 이른다.

더욱 절묘했던 것은 戊申亂이 일어나기 불과 몇 개월 전에 정권 교체가 이루어졌다는 점이다. 무신난이 지방의 소론과 남인계가 경종의 復讐雪恥를 명분으로 擧兵하였으나, 정작 중앙에 주요 제거세력이었던 노론정부가 이미 붕괴되고 소론이 집권함에 따라, 거병의 목적은 상당 부분 희석되고 내용자들도 동요하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경기·강원·충청·경상·전라도 등에 이르는 전국 규모의 반란은 불과 일주일도 안 되어 소론 대신들에 의해서 신속하게 진압되었다. 무신난의 진압에서 소론의 대활약상이 전개되고 국가적인 재난을 맞이하여 이제까지 협력을 꺼려하던 노론의 출사까지 이루어지면서 정국은 극적으로 조기에 수습되었다.¹⁷⁾ 결과적으로 정미환국과 무신난의 최대수혜자는 다름 아닌 국왕 영조 자신이 되었다. 노론이 영조에게 왕이 되도록 도와준 옛 공신이었던 소론은 지금 왕에게 가장 충성하고 왕좌를 보존시켜준 현재의 功臣이었다. 이러한 정국이 되자 영조는 양 세력에 대한 활용가치를 새삼 자각하고 이를 기화로 탕평을 구체화하기에 이른다.

영조 5년(1729) 己酉處分을 단행하여 노론-소론의 병용을 주장할 수 있는 이론적 토대와 명분을 확보하게 되었다. 각 봉당의 준론들을 배제하면서 완론들을 포섭하여 새로운 정국을 준비하였다.¹⁸⁾ 신축년의 대리청정을 주창한 것은 영조에게는患이 되나 임인년의 사건은 逆이므로 여기에 자손들이 간여된 이들은 신원할 수 없다고 보았다. 노론 4대신 중 李健命과 趙泰采는 복관되고 金昌集과 李頤命은 獄案에 남게 되었다. 이는 봉당의 당론 경쟁구도를 국왕이 나서서 調劑保容을 시도한 사건이었다.

탕평파들이 제창한 雙擧互對로 노론세력이 점차 조정에 늘어나자

16) 『英祖實錄』 3년 7월 乙卯.

17) 정만조, 앞의 논문, 55-56쪽.

18) 소론 내 淸流로 불리던 송인명, 조문명, 조현명 등이 탕평파가 되어서 노론과 소론의 양당의 의리를 조제해보고자 노력하였다. 이들은 영조의 왕세제 시절 동궁의 속료들이었다. 결국 탕평파인 소론 완론계들은 실상 모두 왕세제 시절 영조와 인연이 있었던 인물들이었으며, 관직을 충실히 수행하여 왕세제를 돕는 것이 경종에 대한 충성으로 생각되었다. 정만조, 앞의 논문, 35쪽.

다시금 辛壬義理에 대한 논란이 재발하였고, 국왕 역시 내심 자신의 이름을 獄案에서 지우고 싶어 했다. 점차 국왕의 의리를 초월적으로 보는 각 당의 당평파들이 늘어나게 되자 국왕의 신원을 제의하게 되었다. 마침내 영조 17년(1741) 辛酉大訓의 반포로 少論과 南人의 손을 빌어 자신의 역모혐의를 담은 獄案을 폐기하였고 스스로의 정당성 획득에 성공하였다. 이를 통해 국왕과 공동운명체로 묶여 있던 노론 4대신도 복관되었다. 다만 숙종의 御製를 조작한 僞詩사건의 주범 5인만은 罪案에 남겨두었다. 이를 기화로 국왕의 정통성 시비는 종결되고 봉당 간 대립도 약화되는 듯하였다. 이제 정치지형에서 논점은 봉당에서 벗어나 국왕의 새로운 정치지형의 구축으로 옮겨오는 듯했다.

그러나 노론들은 여전히 僞詩사건의 희생자를 최종 죄안에서 지우는 문제와 소론 대신에 대한 토역을 향후 숙원과제로 인식하고 있었다. 영조 22년(1746) 노론계는 신임의리를 내세워 소론 대신 조태구, 최석항, 유봉휘 등의 관작을 추탈하는 데 성공하였다.¹⁹⁾ 이로써 마치 기유처분으로 노론 대신이 半逆半忠 처분을 받은 것과 같은 상황이 소론 대신들에게도 적용되었다. 하지만 아직 이광좌나 조태억에 대해서는 처분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는 두 사람이 바로 영조 즉위초 임인년의 수괴인 김일경을 단죄하고 무신난을 진압한 공신이었기 때문이다.²⁰⁾

신유대훈 이후 점차 노론이 명분을 주도하는 당평의 시대가 되자²¹⁾, 국왕은 왕세자를 통한 세력균형을 모색해나갔다.²²⁾ 영조 25년(1749) 대리청정이 시도되면서 국왕의 위상은 전혀 다르게 변화하였다. 이제 마치 上王으로 자신의 위치를 비정하면서 자신의 대리청정 논의에 대한

19) 김성윤, 「영조대 중반의 정국과 '임오화변'- 임오화변의 발생원인에 대한 재검토를 중심으로」, 『역사와 경계』 43(2002), 66쪽.

20) 소론 대신들은 조태구는 경종 3년, 최석항 경종 4년, 유봉휘 영조 3년, 조태억 영조 4년에 차례로 죽은 상태였으며, 이광좌만이 영조 전반기 소론세력을 이끌다시피 하였다. 최석항은 노론 4대신 중 하나인 조태체를 적극 변호하였기에 정상이 참작되었고, 이광좌와 조태억은 김일경을 적극 단죄하였으며, 무신난의 진압에도 활약하였다. 특히 이광좌는 영조 전반기 당평책의 추진에 없어서는 안 될 인물이었으며, 영조의 지극한 신임을 받았다. 따라서 이들 3인은 을해옥사 이후 소론 대신을 처벌할 때에도 변분이 分等으로 조절을 받았다. 반면에 유봉휘와 조태구는 신임옥사에 적극 간여하였기에 역률로 다루어지게 된다. 이에 소론 역시 유봉휘와 조태구, 그리고 이광좌·최석항·조태억 등으로 등급이 나누어지게 되었다.

21) 정만조, 「영조대 중반의 정국과 당평책의 재정립: 소론당평에서 노론당평으로의 전환」, 『역사학보』 111(1986), 91쪽.

22) 김성윤, 앞의 논문, 65쪽.

협의도 깨끗히 씻어버릴 수 있기를 바랐다.²³⁾ 영조 26년(1750) 尹拯과 李光佐를 致祭하여 소론 명분의 한 축을 회복시키고자 노력하기도 하였다.²⁴⁾

탕평정국이 20여 년 이상 펼쳐지면서 정세는 상당히 변화했다. 초기 탕평을 추진할 때에는 청류들이 나서서 새로운 정치질서를 꿈꾸었으나, 정작 탕평이 궤도에 오르고 나자 탕평당은 또 하나의 권력으로 등장했다. 국왕은 탕평파들을 점차 자신의 울타리로 삼고, 왕실의 혼인관계 속에 묶으면서 하나 들쭉 영조의 절대적인 충성을 맹약하는 신하로 발돋움하였다.²⁵⁾ 심지어 홍계희 등과 같은 인사들은 왕세재 思悼世子조차도 공격하기에 이른다. 이러한 상황에서 각 붕당의 淸流들은 사도세자를 희망으로 생각하고 보호하기에 전력을 다하였다.²⁶⁾

이제 논점은 당론보다는 군주 주도의 탕평을 어떠한 방식으로 구현할 것인가에 초점이 일정 부분 옮겨오게 되었다. 따라서 당시 정치지형에서는 노론-소론의 義理경쟁이 주축을 이루었으나, 또 한편으로는 蕩平黨 權臣 對 각 붕당 淸流의 대결구도이기도 했다.²⁷⁾ 이러한 복합적인 정국구도가 을해옥사를 거치면서 점차 하나의 방향으로 귀착되어갔다.

23) 김성윤은 대리청정의 이유로 영조의 휴식, 정치적 위상의 제고 등을 들고 있으며, 대리청정 후 전제화되는 국왕의 권위가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특히 이러한 신장된 왕권으로 균역법의 탄생이 가능하다고 평가하였다. 김성윤, 앞의 논문, 68쪽.

24) 김성윤, 앞의 논문, 71쪽.

25) 박광용은 탕평파 대신들은 권력의 집중과 왕실 및 상호 간의 연혼관계 속에서 세칭 '탕평당'이라고 불리면서 私利를 추구하는, 권력지향형의 관료 내지 새로운 喬木世臣으로 변신해갔으며, 유자를 싫어하고 士論에 비판적이며 淸要職을 없애는 등의 정책으로 해서 권신들에 대한 견제세력이라는 사립의 신진지식층을 얻지 못하고 영조 말년에는 척신정치로 이행됨을 막지 못했다고 평가하였다. 박광용, 「탕평론과 정국의 변화」, 『한국사론』 10(1984), 201쪽.

26) 최성환, 「정조대 탕평정국의 군신의리 연구」, 서울대 국사학과 박사학위논문(2009), 47쪽.

27) 결국 영조 연간 일차적인 논점인 노론-소론의 대립구도는 을해옥사에서 정점에 이르게 되었고, 새롭게 부각되기 시작했던 탕평당 대 청류들의 대립은 임오화변으로 표면화되었다. 노론 이천보, 유척기, 소론 조현명, 박문수, 이광좌, 남인 체제공 등 붕당을 초월한 청류들이 사도세자 보호론을 주창했으나 실패하자, 향후 왕세손(正祖)을 옹립하는데 성공하여 정조대에는 척신정치 일소를 정치 전면에 내세우게 되었다.

III. 전환점: 을해옥사, 『闡義昭鑑』에 담기다

1. 을해옥사의 진행경과

1) 전초전, 나주 패서사건

영조 31년 정월 14일부터 심상치 않은 한 장의 上書가 날아들기 시작했다. 獻納 韓師直은 公州 火藥 4천 근 전소, 木川의 화약 2백 근 분실, 善山 鉛丸 6만 개 약탈 등의 사건에 대해서 철저한 문책을 요구하였다.²⁸⁾ 비야흐로 禍의 조짐이 시작되는 年頭의 사건이었다. 무언가 조직적으로 지방에서 亂을 꾀하고 있다는 정황이 점차 드러나고 있었다. 그러나 이 사건은 당시에는 큰 문제없이 해결되는 듯하였다.

2월 4일이 되어서야 구체적인 사건으로 나타났다. 소론계 전라감사 趙雲達가 羅州의 客舍에 凶書가 걸린 便고를 馳達하였는데도, 당시 영조는 웃으면서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고 스스로 말할 정도로 침착하게 대응하였다.²⁹⁾ 이는 이미 당대에만 7차례 이상 반복되어온 패서사건으로서 무신난의 잔당 정도로만 치부되었기 때문이다.³⁰⁾

사건에 연루된 주요 인사들에 대한 처벌은 비교적 신속히 이루어졌다.³¹⁾ 2월 11일 禁府都事를 나주에 보내 肅서를 건 尹志 등을 체포하도록 하였다. 2월 20일부터 국왕이 親鞫하기에 이른다. 2월 23일 이하징이 金一鏡의 상소를 절개가 있었다고 평가하여 소론 내의 국왕 영조에 대한 의심이 완전히 불식되지 않았음이 확인되었다.

28) 『英祖實錄』 31년 정월 戊子.

29) 『英祖實錄』 31년 2월 戊申.

30) 표1-영조 전반 패서사건 사례

구분	일자	패서 출현지역	비고
1차	영조 3년 12월 12일	전주	
2차	영조 3년 12월 14일	남원	
3차	영조 4년 1월 17일	한양 西小門	
4차	영조 4년 2월 17일	한양 鐘街	
5차	영조 9년 4월 15일	남원	
6차	영조 10년 정월 2일	대구 鐘齋門	
7차	영조 31년 2월 4일	나주	

31) 『英祖實錄』 31년 2월 乙卯; 『英祖實錄』 31년 2월 甲子; 『英祖實錄』 31년 2월 乙丑; 『英祖實錄』 31년 2월 丙寅; 『英祖實錄』 31년 2월 丁卯; 『英祖實錄』 31년 2월 乙丑; 『英祖實錄』 31년 2월 丁卯; 『英祖實錄』 31년 2월 戊辰; 『英祖實錄』 31년 2월 庚午; 『英祖實錄』 31년 2월 壬申; 『英祖實錄』 31년 2월 癸酉; 『英祖實錄』 31년 3월 乙亥; 『英祖實錄』 31년 3월 丙子.

이 궤사사건의 주요 특징은 주모자가 소론이며, 이에 대한 최초 사건의 보고자부터 소론이었을 뿐만 아니라, 治罪과정에 소론들이 광범위하게 참여하고 있다는 점이다.³²⁾ 이는 마치 무신난을 지켜보는 듯하였다. 소론 내 逆心이 의심을 받게 되자, 3월 2일 소론계에서 수습책으로 먼저 대대적인 합사를 올려서 이광좌와 최석항에게 죄를 물을 것을 청하자, 영조는 劉鳳輝, 趙泰壽 등 연루자에게 역률을 추시하도록 했다. 또 소론 李喆輔 역시 討逆疏를 올렸으며, 소론계들의 상소가 무더기로 올라왔다. 5일에는 소론 이종성이 自訟하기에 이르렀으며, 10일에는 박문수와 이철보가 소견되어 국왕 앞에서 당숙에 빠졌던 지난날의 죄과에 대한 용서를 빌고 용서를 받았다.

3월 5일 마침내 국왕이 태묘에 나아가 討逆告由祭를 지내고 繪音を 내리면서 사건은 일단락되는 듯하였다.³³⁾ 여기서 영조는 그동안 관대하게 처분한 것이 화근이 되어 계속해서 불쾌의 시도가 끊이지 않았다고 하면서 이번 기회에 역신들을 모두 역률로 다스리겠다는 뜻을 천명하였다. 실제로도 옥사 초기에 임인옥사의 주범인 목호룡의 후손들을 移配하는 문제 등이 제기된 것도 이들이 살아 있었기 때문이었다.³⁴⁾ 역적의 후손들을 참하지 않았던 것이다.

그러나 이 시기부터 국왕의 이러한 태도에 변화가 감지된다. 자복하지 않는 죄인들도 상당수 포착되는데, 物故된 이들은 모두 형신을 못 이겨 죽음에 이른 이들이었다. 3월 20일 朴纘新이 자복하지 않자 傳旨를 내려 남문 밖에서 梟示하였는데³⁵⁾, 국왕 영조는 친국과정에서 勝款(자복) 없이 바로 사형에 처하는 비상수단을 동원하기에 이르렀다.³⁶⁾

살아남은 餘孽들이 계속해서 모역을 도모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한 임금은 분노에 치를 떨었다. 3월 20일 김일경·목호룡·이인좌·정희량 네 역적을 孥籍하였고, 李麟佐·李熊輔·朴弼顯·李思晟·鄭希亮·朴弼夢·南泰徵·閔觀孝·李有翼·沈維賢 등에게도 역률을 추시하였다.³⁷⁾ 이미

32) 『英祖實錄』 31년 3월 乙亥; 『英祖實錄』 31년 3월 乙亥; 『英祖實錄』 31년 3월 丙子; 『英祖實錄』 31년 3월 丁丑; 『英祖實錄』 31년 3월 戊寅; 『英祖實錄』 31년 3월 癸未.

33) 『英祖實錄』 31년 3월 戊寅.

34) 『英祖實錄』 31년 2월 癸酉.

35) 『英祖實錄』 31년 3월 癸巳.

36) 10월 24일에도 이성이 공초하고, 여러 번 刑訊을 더하였으나 끝내 자복하지 않았는데, 特旨로 西門 밖에서 正法하게 하여 逆律로써 시행한 기사가 확인된다. 『英祖實錄』 31년 10월 甲子.

신임옥사와 무신년의 지난 역적들을 이제 와서 역적으로 노적하고 역물을 추시하는 것은 당대 최대의 사건에서조차 초기에는 연좌제 적용이 강도 높게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강경한 행보는 이후로도 계속되어 다수가 참형을 면치 못하였다.³⁸⁾ 이때에 이르러 이광좌, 최석항, 조태억 등 소론 3대신의 관작도 추탈하였다. 다만 이들에게 끝내 逆律을 추시하지는 않아서 후일을 도모할 수 있게 했다. 이로써 신축-임인년의 옥사와 연루된 소론 대신들은 모두 처벌되었다.

다시 평상심을 회복한 영조는 長文의 下敎를 내려, 3월 29일 吏胥 및 僉從과 친분이 있는 자들을 黨與로 몰지 못하도록 하였다.³⁹⁾ 이때 蔡濟暉이 용기를 내어 자복하지 않은 죄인들을 포도청에서 자복하도록 하여 정법한 경우가 많았음을 지적하자, 영조는 후일 權臣들이 발호할 수 있다고 여겨 금하도록 했고, 이 조치로 3월 30일 친국을 파하면서 주요 죄인들에 대한 처결을 마무리 짓고, 포도청의 남은 죄인들은 석방하고 포도청에 구류시키고 있는 자도 일체로 내보내도록 하였다.⁴⁰⁾

영조는 이쯤에서 옥사를 종결하고 싶어 했다.⁴¹⁾ 4월 2일 역적을 토벌한 일을 다시금 告廟하고 陳賀하게 했으며, 4월 4일 春塘臺에 나가 試士하고 논상하였다. 4월 13일 고유제를 진행하여 그동안 처벌한 자들의 죄과와 처벌수위를 나열하고 역모를 토벌한 것을 기념하여 잡범들은 모두 사면하도록 조치하였다. 4월 18일 마침내 의금부 추국도 파하였다. 이것으로 을해년의 옥사는 종결되는 듯하였다.

2) 제2막, 乙亥獄事로의 확대⁴²⁾

나주 패서사건의 종결을 기념하기 위해서 5월 2일 春塘臺에 나아가

37) 『英祖實錄』 31년 3월 癸巳.

38) 『英祖實錄』 31년 3월 甲午; 『英祖實錄』 31년 3월 丙申; 『英祖實錄』 31년 3월 戊戌; 『英祖實錄』 31년 3월 癸卯; 『英祖實錄』 31년 4월 戊申; 『英祖實錄』 31년 4월 庚申; 『英祖實錄』 31년 4월 辛酉.

39) 『英祖實錄』 31년 3월 壬寅.

40) 『英祖實錄』 31년 3월 癸卯.

41) 『英祖實錄』 31년 4월 乙巳; 『英祖實錄』 31년 4월 丁未; 『英祖實錄』 31년 4월 丙辰; 『英祖實錄』 31년 4월 辛酉; 『英祖實錄』 31년 4월 乙丑.

42) 본고에서는 옥사가 일단락되고 토역정시를 보는 과정에서 불거진 사태로 국왕이 진노하여 전과는 판이하게 다른 친국을 진행하고 있어, 패서사건이 을해옥사로 변환되는 두 단계로 나누어 보았다. 단, 告廟가 사건의 종료를 의미한다고 볼 때 옥사의 전개과정은 4단계로도 細分된다. ① 영조 31년 2월 4일-3월 5일 1차 告廟, ② 3월 7일-4월 13일 2차 告廟, ③ 5월 2일-5월 13일 3차 告廟, ④ 5월 16일-8월 1일.

討逆廷試까지 보았다.⁴³⁾ 그런데 예상치 못한 사건이 벌어졌다. 바로 국왕이 親臨하여 試士할 때 沈鼎衍이 試券에 亂言을 적어 내는 사건이 벌어졌다. 영조는 床을 치고 눈물을 흘리며 분노에 치를 떨었다.

5월 4일 마침내 亂言을 적어 낸 沈鼎衍 등의 주범들이 伏誅되었고⁴⁴⁾, 5월 6일 임인년 역적 김일경의 從孫 金耀采와 金耀白 등도 연좌되어 호시되었다.⁴⁵⁾ 처음 역적의 자식들을 유배지에서 이배하는 차원에서 이제 종손까지도 죽음에 이르는 차원으로 연좌제의 적용 정도가 점차로 높아지고 있음을 확인해볼 수 있다.

영조는 처음으로 완전히 이성을 상실한 듯하였다. 윤희의 문서에 列聖의 御諱가 한 종이에 나란히 쓰여 있는 것을 보자 진노하여 형벌의 강도가 높은 朱杖으로까지 때리게 하였다.⁴⁶⁾ 마침내 崇禮門의 누각에 나아가 甲冑를 입고 大吹打하면서 다시 윤희를 형신하였다. 임금의 이미 크게 노한 데다가 아주 취해서 윤희의 首級을 梟首하여 깃대 끝에다 매달도록 명하여 백관에게 여러 차례 조리 돌리게 하고 유시하기를 “金一鏡과 陸虎龍의 생각을 품은 자는 나와서 없드리라”고 극언하였다. 이후로도 한동안 처형은 멈추지 않았다.⁴⁷⁾

그러나 영조가 다시 이성을 찾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⁴⁸⁾ 11일 李範錫·尹尙益·尹尙浩를 풀어주도록 하고, 다시금 사건을 조기에 마무리 짓고자 하였다. 5월 12일 강원·전라·경상·함경·경기의 다섯 도의 감사에게 士民을 曉諭하여 안정시키도록 하였다. 5월 13일 대신을 보내 宗廟에 討逆을 세 번째로 告하고 明정전에서 교서를 반포하였다. 5월 14일 역적 김일경·역적 윤지·역적 윤혜·역적 심정연의 種子는 모두 제주목에 나누어 正배하도록 했다.

이러한 국왕의 의지와는 달리, 친국하는 죄인들은 한결같이 화를 돋우기만 했다.⁴⁹⁾ 5월 16일 李侏이 不道한 말을 하자 병조판서로 하여금

43) 『英祖實錄』 31년 5월 乙亥.

44) 『英祖實錄』 31년 5월 丁丑.

45) 『英祖實錄』 31년 5월 己卯.

46) 朱杖은 영조 40년대에 잔혹하다 하여 폐지한 형벌인데, 이를 분노한 군주가 시행하도록 한 것이다. 『英祖實錄』 46년 4월 乙丑; 『大典通編』 「刑典」推斷; 김백철, 『조선후기 영조의 탕평정치: 『속대전』의 편찬과 백성의 재인식』(태학사, 2010), 160쪽, 178-179쪽.

47) 『英祖實錄』 31년 5월 辛巳; 『英祖實錄』 31년 5월 壬午; 『英祖實錄』 31년 5월 甲申.

48) 『英祖實錄』 31년 5월 甲申; 『英祖實錄』 31년 5월 乙酉; 『英祖實錄』 31년 5월 丙戌; 『英祖實錄』 31년 5월 丁亥.

남문 밖에서 사지를 찢어 효시하고 역률을 거행하도록 했다. 제주목에 정배되도록 명했던 죄인의 자손들은 다시 잡혀와 죽음에 이르게 되었다. 5월 金一鏡의 一家인 金耀德·金寅濟·金耀白·金耀采·金有濟·金德濟·金弘濟·金大再·金佑海·金天柱·金耀玉·金耀德·金暢奎 등이 모두 이때 죽음에 이르렀다.

이러한 상황에서 을해옥사 최대의 사건이 터지고 말았다.⁵⁰⁾ 5월 20일 申致雲이 갑진년부터 계장을 먹지 않았다고 진술하니 임금의 분통하여 눈물을 흘렸다. 아울러 李喆輔를 끌어들이고자 하였는데, 영조는 황망한 가운데서도 정신을 놓지 않고 꾸짖으며 엄형을 가해서 誣告임을 자복을 받아냈다. 이때 少論 峻論들이 鞫問 招辭에 연달아 나와서, 李宗城·朴文秀·李喆輔 등이 자주 거론되었으나, 영조는 끝내 불문에 부치고 매번 고한 자를 엄형하여 誣服을 받아내었다. 특히 박문수에 대한 영조의 보호조치는 매우 놀라운 정도였다.⁵¹⁾

아울러 남인계의 顯彰에도 힘을 기울였다. 5월 23일 영조는 “吳光運·洪景輔는 지금 조정에서 마음에 들어 임용한 신하들과 달라서 무신년에 大義를 지켰으니, 지금까지도 더욱 그 사람들 생각이 난다”고 하면서, 오광운과 홍경보에게 모두 賜祭하고 그 자손은 陞敘하도록 하교하였다.⁵²⁾ 이는 영조 초반 탕평을 떠받치는 두 기둥인 소론과 남인세력을 보존하기 위한 조치로 생각된다.

5월 21일 신치운 등 역적이 처단되었다.⁵³⁾ 또한 같은 날 李世鉉, 商楫, 姜夢協 등은 結案을 기다리지 말고 邦刑을 시행토록 하여, 절차를 무시하고 처형을 단행하였다. 바야흐로 궤사사건이 역모로 확정되면서 禍가 종친에게까지 미치게 되었다.⁵⁴⁾ 驪川君 李增, 驪善君 李埜, 李燾, 李燾 등이 죽고, 특히 무신난에 연루되었던 密豐君 李埴도 이때에 와서야 拏戮되었다. 나머지 죄인들도 모두 처형되었다.⁵⁵⁾ 이러한 조치들은 임인

49) 『英祖實錄』 31년 5월 己丑; 『英祖實錄』 31년 5월 庚寅; 『英祖實錄』 31년 5월 辛卯; 『英祖實錄』 31년 5월 癸巳.

50) 『英祖實錄』 31년 5월 癸巳.

51) 『英祖實錄』 31년 5월 庚子; 『英祖實錄』 31년 5월 丙申.

52) 『英祖實錄』 31년 5월 丙申.

53) 『英祖實錄』 31년 5월 甲午.

54) 『英祖實錄』 31년 5월 乙未; 『英祖實錄』 31년 5월 戊戌; 『英祖實錄』 31년 6월 甲辰.

55) 『英祖實錄』 31년 5월 己亥; 『英祖實錄』 31년 5월 庚子; 『英祖實錄』 31년 6월 丙午; 『英祖實錄』 31년 7월 乙亥; 『英祖實錄』 31년 7월 辛巳; 『英祖實錄』 31년 7월 壬午;

옥사나 전국규모의 무신난에 연루된 다수의 주요 인물들이 모두 당시에는 처벌되지 않았으며, 30여 년이 지난 시점에서야 비로소 처벌되고 있음을 반증한다.

국왕은 기나긴 국청을 하루빨리 마무리 짓고 싶어 했다. 영조는 “대간의 글을 보니, 그 말이 어찌 그리 매서운가? 오늘 한 가지를 더 청하고, 내일 한 가지를 더 청하니, 언제 그칠 것이며 律인들 어찌 감당하겠는가”라고 하였다.⁵⁶⁾ 아울러 告廟를 통한 토역의 종결에 대해서는 이번에는 윤허하지 않았다.⁵⁷⁾ 이미 3차례의 고묘가 있었던 탓이다. 영조는 이광좌, 최석항, 조태역 등 소론 3대신의 관작만 추탈하였을 뿐, 역률 추시에는 여러 차례의 상소에도 불구하고 강경하게 반대하였다.⁵⁸⁾ 이로써 을해옥사는 종결을 향해 치닫고 있었다.⁵⁹⁾ 7월 23일 패서사건의 원인이 되었던 湖南을 별도로 진정시키라고 전교하고, 8월 1일 익명서를 발견하면 즉시 태워버리도록 명하였다.

당대의 史官은 을해옥사에 대해서 黨習의 결과로 나타난 것이며, 이것이 군주의 권위보다도 당론을 우선시하는 폐단을 낳았다고 평하였다.⁶⁰⁾ 이러한 붕당의 극단적인 경쟁상태를 해소하는 것이 당시의 시급한 과제였으며, 을해옥사는 붕당을 타파하고 황극을 세우는 탕평의 경지로 끌어올리기 위한 기나긴 고심의 결과였다. 이러한 엄청난 비극의 재현을 막기 위해서는 이제 바야흐로 붕당 간 의리를 초월하는 국왕 주도의 義理가 보다 공고하게 자리 잡혀야 했다.

2. 『闡義昭鑑』의 편찬과 귀결

역옥이 대체로 마무리되어가자 집의 서명응·지평 원인손 등이 연명차자를 올려 역적을 도벌한 진말을 기록하기를 청하자⁶¹⁾, 金在魯·李天輔·趙載浩 등이 闡義理編鑑纂修廳都提調가 되어 『闡義昭鑑』의 찬집에

『英祖實錄』 31년 7월 甲申; 『英祖實錄』 31년 7월 乙未.

56) 『英祖實錄』 31년 6월 癸丑.

57) 『英祖實錄』 31년 6월 丙辰.

58) 『英祖實錄』 31년 6월 丁巳; 『英祖實錄』 31년 6월 辛酉; 『英祖實錄』 31년 7월 癸酉.

59) 『英祖實錄』 31년 7월 乙未; 『英祖實錄』 31년 8월 壬寅.

60) 『英祖實錄』 31년 7월 乙未.

61) 『英祖實錄』 31년 5월 壬寅; 『英祖實錄』 31년 6월 癸卯.

들어가게 되었다. 이때까지 국왕의 義理明辯書로는 『감란록』과 『대훈』 등이 이미 편찬된 바 있었다. 전자는 무신난 토역의 정당성을, 후자는 신임의리를 밝히는 성격이 짙었다. 『천의소감』은 이 양자의 성격을 복합적으로 지니고 있었다. 그래서 『천의소감』의 내용은 을해옥사에 국한되지 않고, 그 기원이 되는 辛丑·壬寅(1721-1722)의 옥사 전후부터 기술되었다. 『감란록』이 단순히 무신난에 대한 사건일지와 그 공초기록을 위주로 재정리된 데 반해, 『천의소감』에서는 乙亥獄事 자체를 다룬 권4 외에도, 卷首에서 권3에 이르기까지 경종과의 관계설정과 즉위과정의 합법성에 대해서 보다 명확하고 체계적으로 서술하여 국왕의 입장을 잘 대변하고 있다.⁶²⁾

『천의소감』은 활자본으로 간행되어, 鼎足山城 史庫·太白山 史庫·藝文館 5개 등 주요 사고에 보관하도록 조치하였다.⁶³⁾ 이듬해인 영조 32년(1756)에는 廣州府에서 復刻되어 목판으로 재간행되었다.⁶⁴⁾ 또한 같은 해 諺解로도 간행되었다. 이것이 효시가 되어 『明義錄』, 『續明義錄』 간행 시에도 바로 언해되어 中外에 반포되었다. 목판본과 언해본의 간행은 적극적으로 보급하기 위한 정책이다. 금속활자본에 비해 목판이 대량 인쇄가 용이하고, 언해본은 독자층을 넓힐 수 있기 때문이다. 간행과정은 『闡義昭鑑纂修廳儀軌』(奎 14206)로 기록이 남아 있다. 卷首에는 英祖의 批答을 版刻한 「手書筭批」와 「御製諭纂修諸臣(申晚奉書)」과 「綸音(南有容奉書)」·「進闡義昭鑑筭子(編纂諸書筭子)」·「進闡義昭鑑箋(金在魯上箋)」·「凡例(7條)」 등이 있으며, 卷末에는 南有容의 「闡義昭鑑跋」, 「奉教纂修諸臣」 등이 있다. 본문의 세부내용은 다음 표2와 같다.

62) 『천의소감』의 판본 및 體裁에 대해서는 다음 글 참고. 김백철, 「영조대 국왕의리명변서의 편찬과 의미」, 『규장각 소장 왕실자료 해제·해설집』 4(서울대 규장각, 2005), 381-383쪽.

63) 『英祖實錄』 31년 11월 乙未; 『闡義昭鑑』(奎 1177), (奎 1863), (奎 3789).

64) 『闡義昭鑑』(奎 1545).

표2-『閩義昭鑑』 권1-4 본문 세부항목

구분	사건 연월	사건 개요	비고
권1	1 景宗 元年 8月 戊寅	正言 李廷燾가 景宗이 多病하므로 미리 王世弟를 정하지는 上疏	
	2 景宗 元年 8月	노론 金昌集·趙泰采·李健命·閔鎮遠·李晩成·李宜顯·任陸·李弘述·洪錫輔 등이 이를 찬동하는 請對入侍	
	3 景宗 元年 8月	少論 柳鳳輝의 斥建儲上疏	
	4 景宗 元年 8月	王世弟(延勳君, 英祖)의 王世弟罷歸를 청원하는 上疏	
	5 景宗 元年 8月	少論 趙泰耆의 주장	
	6 景宗 元年 10月 丁卯	王世弟聽政의 조치	
	7 景宗 元年 10月	대리청정을 반대하는 韓世良의 上疏	
	8 景宗 元年 10月	王世弟의 四上辭疏	
	9 景宗 元年 12月	金一鏡·朴弼夢·李眞儒·李明誼·鄭楷·尹聖時·徐宗履 등의 建儲반대 聯名上疏	
	10 景宗 元年 12月	三司의 啓請에 따른 金昌集·李碩命·趙泰采·李健命을 極律에 처한 것	
	11 景宗 元年 12月	朴尙儉·文有道와 石烈·必貞 등의 東宮 모해사건이 발각되어 복주한 일	
	12 景宗 2年 正月	鄭滄의 上疏	
	13 景宗 2年 正月	王世弟册封奏請使의 狀啓	
	14 景宗 2年 3月 壬子	陸虎龍의 王世弟 및 四大臣 배척 上疏	
	15 景宗 2年 9月	金一鏡의 教文撰進	
	16 景宗 3年 2月	趙泰耆·崔錫恒 등의 入侍와 그들의 陸虎龍 單勳 요청	
권2	17 景宗 4年 8月 乙未	景宗昇遐와 英祖嗣位	
	18 英祖 卽位年 9月	儒醫 李公胤의 竊配	
	19 英祖 卽位年 11月	노론 李巨源의 少論側 彈劾疏	
	20 英祖 卽位年 11月	李鳳鳴의 少論側 彈劾疏	
	21 英祖 卽位年 11月	李明彦의 少論側 彈劾疏	
	22 英祖 卽位年 12月	金一鏡·陸虎龍 등의 伏誅	
	23 英祖 元年 正月	前都事 柳應煥의 上疏	
	24 英祖 元年 正月	李天海의 逆賊罪伏誅(景宗이 1724년 8월 20일 水刺에 오른 蟹醬을 먹고 죽었다는 소문을 퍼뜨린 죄)	
	25 英祖 元年 正月	諫院과 憲府의 啓(少論除去를 위한 건의)	
	26 英祖 元年 正月	孫荊佐의 鞫問	
	27 英祖 元年 正月	金吾胥隸 李晩俊·張翊漢 등의 鞫問	
	28 英祖 元年 正月	徐斗昌(尹就商의 慳從)의 鞫問杖斃	
	29 英祖 元年 正月	沈廷玉의 鞫問과 減死島配	
	30 英祖 元年 正月	尹就商의 鞫問	

표2-계속

구분	사건 연월	사건 개요	비고	
권3	31	英祖 4年 正月	戊申亂 개요(즉, 李麟佐, 鄭希亮, 朴弼夢 등의 擧兵 및 討平에 대한 간략한 전말)	
	32	英祖 6年 3月	李垓·李坻 및 羅弘產 등이 逆賊罪로 伏誅된 전말	
	33	英祖 16年 5月	柳鳳輝·趙泰耆의 追奪과 李光佐의 罷職에 대한 三司의 啓請	
	34	英祖 21年 9月	翼觀·順觀·從子齋이 造정을 誣罔하였다는 罪로 杖斃	
	35	英祖 22年 9月	權益寬의 官爵을 追奪할 것을 憲府에서 啓請한 일	
	36	英祖 24年 11月	權維·權祐 등의 鞠問中 杖斃	
권4	37	英祖 31年 2月	全羅道觀察使 趙雲達의 羅州掛書에 대한 馳書로 掛書에 관련되었다고 지목되는 人事들에 대한 討滅令이 전개되고 人物 하나하나에 대한 처벌기록이 수록되었다.	
	38	英祖 31年 2月	尹志의 拿鞠과 伏誅	
	39	英祖 31年 2月	李孝植의 知情不告遲晚 正刑(死刑)	
	40	英祖 31年 2月	羅州前牧使 李夏徵은 尹志와 친밀하여 書筒이 밝다는 혐의로 拿鞠·大逆下道를 遲晚하여 正刑	
	41	英祖 31年 2月	金沆·金柱天(草賊과 締結) 등의 국문	
	42	英祖 31年 2月	朴纘新의 국문과 南門外梟示	
	43	英祖 31年 2月	趙東鼎·閔厚基·李修範의 국문	
	44	英祖 31年 5月	討逆慶科의 設試	
	45	英祖 31年 5月	姜夢協의 국문과 遲晚하여 正刑	
	46	英祖 31年 5月	柳明斗의 刑訊과 加刑으로 인한 物故	
	47	英祖 31年 5月	金道成의 遲晚하여 正刑	
	48	英祖 31年 5月	金寅濟(金一鏡 從子)의 謀逆同參 遲晚正刑, 이에 따른 拏籍	
	49	英祖 31年 5月	李埈에 대한 大逆律 棘施	
	50	英祖 31年 5月	李佺의 국문과 南門外梟示 및 肢解	
	51	英祖 31年 5月	呂善餘의 사형	
	52	英祖 31年 5月	宋秀岳·申致雲·朴師緝 등의 사형	
	53	英祖 31年 5月	柳壽垣의 국문에 大逆不道를 遲晚하여 正刑 拏籍	
	54	英祖 31年 5月	沈鼎衍의 국문과 大逆律 적용	
	55	英祖 31年 5月	金省의 刑訊과 水口門外梟示 肢解後에 강원감영에 내려보내 10일간 懸首하고 道內回示한 일	
	56	英祖 31年 5月	金正觀·金光秀의 국문과 사형	
	57	英祖 31年 6月	李學의 국문과 處絞 후의 拏籍	
	58	英祖 31年 7月	李巨源의 연좌술에 따른 국문, 水口門外 梟示	
	59	英祖 31年 7月	金正履가 大逆不道를 遲晚하여 正刑拏籍된 일	
	60	英祖 31年 7月	李明祚가 謀逆同參에 대한 遲晚으로 正刑拏籍된 일	

영조는 을해옥사의 경과를 정리하는 『천의소감』의 찬술방식에도 골몰하였다. 9월 21일 찬수청을 혁파하면서 영조는 김재로의 序文이 노론의 당론을 확립하는 데 있음을 보고 이를 序文을 지어 殺戮을 열려고 한다고 비판하였다. 뿐만 아니라, 노론이 黨論을 하지 않은 연후에야 눈을 감을 수 있으며, 노론의 搢紳들이 다시는 당론을 하지 않겠다고 陳疏하여 스스로 고백해야 한다고 역설하였다.⁶⁵⁾

이는 영조가 무엇보다도 노론이나 소론의 의리를 확립하는 문제보다는 국왕의 혐의사실을 해소하고 국왕의 의리명분을 확립하는 데 초점이 맞추어지기를 바랐기 때문이다. 특히 영조는 申致雲의 공초에서 제기된 계장사건을 해소하고 싶어 했다. 그래서 『천의소감』의 찬수자들을 인견하면서⁶⁶⁾, 慈聖(仁元王后)의 하교를 듣고서야 그때 황형께서 계장을 進御한 것이 御廚에서 供進한 것임을 알았다고 하면서 이를 기재하여 자신의 혐의사실을 지우게 했다.

게다가 영조는 을해옥사가 종결되고 『천의소감』이 간행되자 이전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정국 주도를 단행하고자 했다. 관중추부사 이종성·영의정 이천보 등이 백관을 거느리고 존호를 올릴 것을 청하자⁶⁷⁾, 영조는 좀처럼 존호의 가상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거부하는 듯한 자세를 취하였다. 60대의 임금이 눈이 내린 殿庭에 자리를 펴고 俯伏하면서 70대의 慈聖이 존호를 받도록 하교한 전교를 거두어주기를 청했다. 判府事李宗城 등이 여러 宰臣들을 거느리고 밀치고 들어가 엎드리면서 자성의 하교를 다시금 전하자 영조는 어쩔 수 없다는 듯이 존호가상을 받아들였다.⁶⁸⁾

영조는 亂逆의 발생은 실은 모두 朋黨에서 말미암았다고 하면서 ‘破朋黨’ 3字로써 수백 년 동안 내려오던 淫朋을 하루아침에 타파하여 大義가 밝아졌다는 점을 존호추상의 이유로 들었다.⁶⁹⁾ 다음 해(영조 32) 정월 마침내 대왕대비전과 生母인 육상궁에게도 모두 존호를 가상한다는 명분하에 국왕도 體天建極 聖功神化라는 존호를 받았다.⁷⁰⁾ 결국 봉당의

65) 『英祖實錄』 31년 9월 壬辰.

66) 『英祖實錄』 31년 10월 己酉.

67) 『英祖實錄』 31년 12월 乙巳.

68) 『英祖實錄』 31년 12월 丁未.

69) 『英祖實錄』 31년 12월 丙午.

70) 『英祖實錄』 32년 정월 己巳.

소멸과 탕평군주로서의 자신의 위상을 만천하에 과시하였다.

국왕 주도의 명분을 위해서는 초기 탕평파들의 위상이 보존되어야 했다. 을해옥사는 사실상 소론이 소론을 토역한 과정이 되었다. 이는 생존을 위해서 소론으로서의 정체성을 버리고 국왕의 탕평신료로서 자신을 자리매김하지 않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명분에서 불리한 소론과 달리, 우위를 점한 노론계의 압박은 점차 심해졌다.⁷¹⁾

노론의 독주를 견제하고 국왕 주도의 탕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초기 탕평정국에서 소론계를 이끌고 후원한 이광좌 세력의 보호가 절실했다. 이에 영조는 이광좌에 대한 혐의를 『천의소감』에 기재하여 역률 추시를 원하는 노론의 요구를 끝까지 완강하게 거부하였다.⁷²⁾ 영조는 소론 이광좌뿐만 아니라, 남인 沈檀도 『천의소감』에서 제외하여 노론을 견제할 수 있는 양대 세력을 보존하고자 하였다.⁷³⁾

『천의소감』이 완성되면서⁷⁴⁾ 지나간 옥사가 종결되고 사건을 어떠한 방식으로 기술할지 등이 모두 정해졌다. 논란은 이제 중국을 향하는 듯했다. 그러나 아직 『천의소감』의 간행 의의를 두고 각기 同床異夢이 이어졌다. 노론계열에서는 『천의소감』에 명시된 경종의 仁顯王后에 대한 誠孝를 인현왕후의 同氣인 민진후 형제를 돌보아 致祭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연결시켰다.⁷⁵⁾ 경종의 효성스러움을 노론 산림들의 추존사업으로 마무리 짓고자 하는 다분히 정략적인 발언이었다.

이에 질새라 국왕 영조도 좌시하지만은 않았다.⁷⁶⁾ 編次人을 불러 보고 故 相臣 洪致中·李堦·趙文命·宋寅明·趙顯命·金若魯·鄭羽良·李台佐 등에게 모두 致祭하라고 명하였다. 이는 노론-소론을 막론한 초기 탕평정국을 주도했던 인사들이었다. 아울러 영조 전반기 탕평을 상징하는 인사들인 홍치중(노론)·조현명(소론)·박사수(소론) 등을 贈職하도록 하였다. 이는 을해옥사를 노론의 당론을 확립하는 계기가 아니라, 국왕의 탕평정치의 최종 완결로 마무리하고자 하는 의도였다. 또한 노론 4대신

71) 『英祖實錄』 31년 2월 己巳.

72) 『英祖實錄』 31년 10월 癸丑; 『英祖實錄』 31년 10월 甲寅; 『英祖實錄』 32년 12월 戊子; 『英祖實錄』 32년 12월 辛卯.

73) 김성윤, 앞의 논문, 75쪽.

74) 『英祖實錄』 31년 11월 乙未.

75) 『英祖實錄』 31년 11월 乙未.

76) 『英祖實錄』 31년 12월 癸卯; 『英祖實錄』 31년 12월 丁未.

김창집·이이명·이건명·조태채의 祠堂을 복설토록 윤허하였지만, 같은 날 초반기 탕평을 이끌었던 故 송인명소론에게도 致祭토록 하고, 영중추 부사 김재로[노론]에게 手書를 내려 포장했다.⁷⁷⁾

게다가 성균관 유생들이 4대신의 旌閭까지 요구하자⁷⁸⁾, 문정공 송시열·문정공 송준길의 문묘 종사를 명하는 선에서 타협하였다.⁷⁹⁾ 같은 날 도승지를 보내어 箕子殿에 致祭를 올리는 것도 잊지 않았다. 이는 탕평을 실천한 군주라는 ‘建極’이라는 尊號를 받고 감격한 것을 기념하기 위함이었다고 하지만, 노론의 명분만을 세우지 못하도록 한 조치였다.⁸⁰⁾ 결국 율해옥사를 계기로 국왕 영조는 노론 대 소론의 명분을 논하는 종래의 정치명분을 자신의 탕평으로 귀결시키도록 재조정해냈다.

IV. 조선 堯舜의 탄생: 朋黨을 넘어서서

1. 堯舜이 된 蕩平군주

영조 초반 정치지형이 급격히 변화하면서 각 朋黨의 義理를 초월하는 보다 거시적이고 새로운 정치명분의 필요성이 蕩平정치로 나타났다.⁸¹⁾ 蕩平의 논리는 三代(夏·殷·周) 이상정치에 기반하였으나⁸²⁾, 영조 연간에는 이를 한 세대 앞서는 唐虞[堯舜]로까지 연관 지어 일관된 전통으로 이해하였다.⁸³⁾ 堯舜이 행한 이상적인 정치가 바로 蕩平이라 보았다.⁸⁴⁾ 이러한 새로운 패러다임의 제기는 사실 경종 연간 노론 4대신의 숙청과 영조 즉위후 소론 5대신의 처벌을 둘러싼 논쟁에서 어느 한 붕당의 논리를 채택할 경우 다른 붕당은 살아남을 수 없는 양자택일의 정치구도에서 기인하였다. 숙종 연간 환국기에 붕당의 교체가 정책의 好不好에서 벗어나 忠逆의 문제로 변질되면서 남인은 완전히 정계에서 은퇴해야

77) 『英祖實錄』 31년 12월 癸丑.

78) 『英祖實錄』 32년 정월 丁酉.

79) 『英祖實錄』 32년 2월 己亥; 『英祖實錄』 32년 2월 癸丑; 『英祖實錄』 32년 2월 辛酉.

80) 『英祖實錄』 32년 2월 己亥.

81) 『英祖實錄』 즉위년 11월 辛亥.

82) 『書經』 「洪範」.

83) 『英祖實錄』 20년 10월 丁巳; 『英祖實錄』 2년 12월 乙亥.

84) 요순정치상에 대해서는 다음 논문 참고. 김백철, 「조선후기 영조대 탕평정치의 이념과 『주례』」, 『한국사론』 51(서울대 국사학과, 2005), 288-300쪽.

했기에 당론의 일방적 지지는 부작용이 컸다. 이제 영조 연간 이러한 논쟁은 노론-소론 간에 재점화되어 누가 忠臣이고 누가 逆臣인지를 판부해야 하는 상황이 도래한 것이다.

영조는 어느 한 봉당의 논리를 따르는 방식에서 벗어나 제3의 길을 모색하였다. 이를 위해 새로운 정치명분과 패러다임을 제시하고자 노력하였다. 여기에 선왕대에 제기된 탕평정책이 적극적으로 활용되었으며, 보다 구체화한 이념적 지향으로 요순의 이미지가 제시되었다. 탕평에서 기반하고 있는 군주의 표준인 皇極을 중심으로 四方八方の 臣民이 따르게 되면 궁극에는 요순의 이상사회를 구현할 수 있다고 믿었다.

하지만 이러한 논리는 역설적이게도 봉당정치기 士林이 줄기차게 주장해온 君主聖學論의 일환이었다는 점이 흥미롭다. 사림의 聖學論이 적극 채택되자 국왕과 신료들 사이에는 건전한 긴장관계가 형성되었다. 영조 초반까지만 해도 국왕의 言動 하나하나가 모두 비판의 대상이 되었다.⁸⁵⁾ 堯舜은 성리학의 심성수양론에서 반드시 지향해야 할 목표였기 때문에 오히려 신료들의 적극적인 권면의 대상이 되었다. 신료들은 “국왕을 요순으로 만든다”는 기본 입장을 견지하고 있었다.⁸⁶⁾

다만 이전 시대와 달라진 점은 국왕이 이제 이러한 가치를 만들어나가자고 주장하는 데서 벗어나, 이미 스스로 요순이라고 상정한 점이다. 요순이 되기 전에는 신하들이 국왕을 훈도의 대상으로 여기지만 이미 국왕이 聖君의 자질을 타고난 요순이라면 신하들은 국왕의 권위에 어떠한 도전도 해서는 안 되었다. 특히 요순은 유교사회에서 이상적인 군주이고, 그런 만큼 이들이 탕평정치를 실천한 인물로 보는 것은 중요하였다. 이는 환국기의 충역시비로부터 벗어나 국왕을 君師의 지위에 상정하는 새로운 가치체계를 창출하기 위한 전제였다.

그러나 이러한 영조의 논법이 처음부터 받아들여진 것은 아니었다. 영조 13년 국왕은 신하들이 자신의 의지를 관철시켜주지 않자 “신하들에게서 모욕을 받았다”고 하면서 단식투쟁을 벌였고, 급기야 신료들은 밤 3경에 관을 벗고 대명하기에 이른다.⁸⁷⁾ 이러한 상황은 아직 국왕이 비상수단을 동원하지 않고는 신료들을 제압하기 어려운 시점이었음을

85) 『英祖實錄』 11년 10월 丙寅.

86) 『聖學輯要』 「進筭」 및 「序」; 『英祖實錄』 7년 6월 丁未.

87) 『英祖實錄』 13년 8월 丁卯.

의미한다. 요순의 권위가 한갓 구호에 그치지 않고 신하들에게 완전한 心腹의 경지에 이르는 데는 상당한 세월이 필요했다.

그랬기에 영조는 먼저 요순의 모든 덕목을 祖宗에 전이시켜 왕실의 권위를 높이고자 하였다.⁸⁸⁾ 堯舜은 성리학에서 精一執中의 상징인 心法을 後王인 禹·湯·文·武·周公에게 전한 것으로 이해되었다.⁸⁹⁾ 따라서 心法의 계승은 바로 堯舜을 잇는 길이었다. 영조대는 祖宗으로부터 當今에 이르기까지 列聖의 心法을 계승하였다고 믿어왔다.⁹⁰⁾ 곧 祖宗의 계승이 堯舜을 본받는 것과 하나임이 천명되었다.⁹¹⁾ 중국고대 聖君의 권위를 조종에 가탁하여 조종을 신성화하고, 조종의 신성화는 필연적으로 이를 계승한 現王의 권위를 격상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영조는 입버릇처럼 “오늘날의 生靈들도 祖宗朝의 赤子”라 평하면서⁹²⁾, 조종의 어진 정치를 본받는다고 하였다. 이는 마치 儒家에서 三代의 백성이 오늘의 백성이라고 말한 것과 같은 논법을 조선의 현실에 끌어온 것이다.⁹³⁾ 조종은 이미 요순임이 관명되었고, 백성도 그러하다면 왕 자신만 그와 같은 성군이기만 하면 되었다. 점차 신료들도 군주와 요순을 동일시하는 경지에 이르게 되었다.⁹⁴⁾ 결국 영조는 祖宗을 신성화하여 요순의 덕을 잇고 나아가서는 그보다 한 단계 격상된 권위를 담고자 하였다. 朝家를 신성시함으로써 堯舜之治는 이미 국초뿐 아니라 당대에도 구현된 것으로 받아들여졌다.

88) 『明宗實錄』 2년 6월 壬寅.

89) 蔡沈, 『書經集傳』 「序」.

90) 『景宗修正實錄』 2년 9월 癸卯.

91) 『英祖實錄』 즉위년 11월 辛亥.

92) 『英祖實錄』 6년 3월 甲午; 『英祖實錄』 8년 11월 癸卯; 『英祖實錄』 10년 8월 乙巳; 『英祖實錄』 16년 1월 丙午.

93) 『書經』 「周書」 康告; 『論語』 「衛靈公」.

94) 『英祖實錄』 14년 9월 庚戌.

2. 전제화된 권력의 형성⁹⁵⁾

영조는 즉위한 지 약 30여 년간 국정운영에서 살얼음을 걷는 듯이 살아왔다. 黨習一掃를 내세웠지만 신료들은 어김없이 국왕의 蕩平과 堯舜입론 뒤에 보란듯이 黨論을 덧붙여왔다. 때로는 斷食투쟁을 불사하는 고집으로⁹⁶⁾, 때로는 자신의 분을 참지 못해 거친 표현도 함부로 하였지만 이내 사과하고 타협하였다.⁹⁷⁾ 상당한 인내로 신료들의 양보를 얻어내어 소기의 성과를 냈을 뿐만 아니라 본인의 정책과제들도 대부분 완결지었다. 국왕의 정치명분을 회복하여 군주주도의 정국운영을 현실화 하였을 뿐만 아니라, 문물제도의 대대적인 정비를 통해서 국가체제를 정비하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세제를 개편하여 국가재정과 小民의 안정에 힘썼다. 왕위 역시 일찌감치 사도세자로 하여금 대리청정을 맡도록 하여 후계구도를 확립하였다. 그리하여 回甲을 맞이하기 전까지 國制를 정비하고 균역법을 완성하는 등 민반의 준비를 마치고 사회부문의 개혁을 마무리할 수 있었다.

그러나 정작 숙원사업들이 대부분 해결되자 영조 31년(1755) 이후부터는 더 이상 참지 않는 모습이 확인된다.⁹⁸⁾ 여기에는 乙亥獄事가 주요한 계기로 작용하였다. 정권을 비방하는 掛書사건은 이전에도 수차례 확인

95) '專制主義'는 본래 칼 비트 포겔이 서양의 절대주의에 대비하여 제시한 개념이며, 동양에 대한 극도의 편견에서 비롯되었다[Karl A. Wittfogel, *Oriental Despotism: A Comparative Study of Total Power*(Yale University Press, 1955), pp. 101-136; 임계순, 「Karl A. Wittfogel의 동양식 전제주의 이론에 관한 고찰」, 『정신문화연구』 17(1983), 140-148쪽]. 그러나 이후 중국사 연구자들 사이에서 초월적 권력을 지닌 중국의 황제를 상징하는 개념으로 수용되었다[전영진, 「주원장집단과 명초전제주의 문제」, 『경북사학』 21(1998), 495-508쪽; 전영진, 「명태조의 정치사상과 군주전제의 성격」, 『중국사연구』 5(1999), 110-126쪽]. 본고에서는 18세기 탕평군주를 17세기 조선의 군주보다 높은 권능을 행사하는 왕이라고 평가하는 입장에서 이 개념을 일부 차용하였다.

96) 『英祖實錄』 13년 8월 乙丑; 『英祖實錄』 13년 8월 丁卯.

97) 영조는 즉위 초부터 “不忍聞之教”로 지칭되는 강경한 발언들을 쏟아냈다. 대개는 분을 이기지 못해서 나온 거친 표현들이 많았으나(『英祖實錄』 9년 6월 戊午; 『英祖實錄』 10년 4월 辛未), 이내 자신의 말실수를 자주 사과하면서 신하들과 타협하는 모습을 보였다(『英祖實錄』 13년 8월 庚午). 뿐만 아니라 擇君이나 讓位와 같이 정치적으로 민감한 발언들로 신하들을 압박하는 경우도 확인된다(『英祖實錄』 11년 2월 辛亥; 『英祖實錄』 28년 12월 辛丑).

98) 영조 20년대 후반에 정립된 균역법은 상당한 타협의 산물로서 사대부의 이해가 일정 부분 관철되었다[김백철, 『조선 후기 영조의 탕평정치: 『속대전』의 편찬과 백성의 재인식』(태학사, 2010), 237쪽, 표30]. 그러나 이후 영조의 행보는 이러한 타협의 가능성이 매우 희박해진다.

된다. 그러나 늘 그렇듯이 국왕은 균형감각을 잃지 않았고 적절한 수위에
서 처절하였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尹志 부자와 교우했던 소론가문
전체가 일망타진당하면서 사태는 걷잡을 수 없게 변하였다.⁹⁹⁾ 심지어
간단한 조사로 끝날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親鞫과정에서 경종독살설을
재확인하면서 노여움이 앞서게 되자 합리성과 정상적인 행정절차를
생각할 수 없게 되었다.¹⁰⁰⁾ 주요 범죄자 88명에 대한 직접 처형이 단행되었
고 연좌된 인원을 합하면 5백여 명에 대한 처벌이 단행되었다.¹⁰¹⁾ 영조
초반의 전국적인 규모의 반란이었던 무신난에서조차 이 정도의 처벌은
있지 않았다. 벽서사건에 불과했던 일이 일파만파로 확대되면서 어느
순간 역모로 탈바꿈해 있었다.

이 사건을 계기로 큰 변화가 나타났다. 국왕의 타협적인 면모는 상당
부분 사라지고, 보다 강경한 어조와 행동이 나타나게 되었다. 기실 노론이
일관되게 주장해왔던 소론에 대한 복수설치가 을해옥사를 기점으로
해소된 것처럼 보이지만, 상황은 노론에게만 유리하게 전개되지는 않았
다. 영조는 노론에게 소론의 처벌과정을 여실히 보여주면서 黨習의
결과가 이러하다는 사실을 재차 강조하였다.¹⁰²⁾ 이를 기점으로 당론은
표면 아래로 가라앉게 되었다. 이제 누구도 국왕이나 대신들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의견을 개진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졌다.¹⁰³⁾

영조 31년(1755) 임금이 永禧殿에서 酌獻禮를 행하고 大駕를 돌릴
때 禁衛의 陣中에 함부로 들어온 사람이 많은 것을 보고 本兵이 단속하고
경계하지 않았다는 것으로 병조판서 洪象漢을 잡아들이도록 하였다.¹⁰⁴⁾
이에 摠戎使 洪鳳漢이 備局堂上으로서 입시하여 병조판서가 금위대장을
잡아들이게 한 것은 불가하다고 진언하자 영조는 몹시 노여워하면서,
홍봉한을 잡아들여 장차 梟刑을 집행하도록 명하였다. 비국당상들이
구원하니 홍봉한에게 아부한다고 책망하면서 체임과 파직을 명하였다.

99) 배혜숙, 「을해옥사의 참여계층에 관한 연구 -나주부사건을 중심으로-」, 『백산학보』 40 (1992); 이상배, 「영조조 윤지폐서사건과 정국의 동향」, 『한국사연구』 76(1992); 조윤선, 「조선 후기 영조 31년 을해옥사의 추이와 정치적 의미」, 『한국사학보』 37(2009).

100) 조윤선, 「英祖代 남형·혹형 폐지과정의 실태와 欽恤策에 대한 평가」, 『조선시대사학보』 48(2009), 226-243쪽.

101) 박광용, 「영조대 당평정국과 왕정체제의 정비」, 『한국사』 32(국사편찬위원회, 1997), 62-63쪽.

102) 『英祖實錄』 31년 2월 己巳; 『英祖實錄』 31년 3월 癸未; 『英祖實錄』 31년 9월 壬辰.

103) 『英祖實錄』 31년 3월 癸未.

104) 『英祖實錄』 31년 2월 甲寅.

승지 鄭弘淳이 諫하고, 좌의정 金尙魯가 筭子를 올리니 흥분을 가라앉히고 흥봉환을 복직시키기에 이른다.¹⁰⁵⁾ 이 사건은 을해옥사가 아직 본격화되기 전의 일이었는데도 임금의 권위에 도전하는 행위에 대해서 극단적인 대처를 행한 것을 알 수 있다.

영조 32년(1756) 代理聽政 정국에 큰 소요가 감지된다. 영조는 李彥衡의 上書에 대해서는 “한마디 말로 조정을 혼탁하게 한다”고 하면서 곧 바로 庶人으로 만들어버렸다.¹⁰⁶⁾ 몇몇 신료들을 탄핵하는 것을 黨習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또한 正言 金相度가 治國의 도리와 言路를 열 것을 상서하였는데, 이 중 대신들을 힐난하는 글이 들어 있다고 하면서 영조는 建極(을해옥사) 이전의 사람이라고 평하면서 급기야 庶人으로 만들어버렸다.¹⁰⁷⁾

특히 이 일로 김상도에게 元良(사도세자)이 속아서 온화한 비답을 내렸다고 진노하면서 왕세자의 비답은 바로 반포치 못하도록 제어하였다.¹⁰⁸⁾ 또 이러한 상소를 제대로 걸러내지 못한 책임을 물어서 영의정 이천보·좌의정 김상로가 파직되었다. 이 날 영조는 “黨人이 기회를 타고 날뛰고 있다”고 평하고 “黨習을 다시 하면 임금을 저버리는 것이다”라고까지 극언하였다.¹⁰⁹⁾ 국왕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급기야 밤 4경에 진전의 동쪽 뜰에 나가 단석을 펴고 北向하여 사과하기까지 하였다.¹¹⁰⁾ 이러한 영조의 극단적인 행동들은 을해옥사를 기준으로 더 이상 통상적인 三司의 언론 기능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선언과도 다름없었다. 이 때문에 왕세자와 두 정승까지 죄를 입는 지경이 되었다.

영조 35년(1759) 부제학 金時粲이 동궁(사도세자) 속료들의 비행을 비판하는 상서를 올렸는데, 왕세자는 유념하겠다는 온화한 비답을 내림과 동시에 궁속의 비행을 직접 조사하도록 下命하였다.¹¹¹⁾ 그런데 국왕 영조는 이 사건을 좌시하지 않았다. 言官의 諫言에 대해서 새로운 黨心이 일어날 조짐으로 경계해 마지않았다.¹¹²⁾ 노론 대 소론의 지루했던 논쟁들

105) 『英祖實錄』 31년 2월 乙卯.

106) 『英祖實錄』 32년 2월 壬子.

107) 『英祖實錄』 32년 2월 庚戌; 『英祖實錄』 32년 2월 甲寅.

108) 『英祖實錄』 32년 2월 甲寅.

109) 『英祖實錄』 32년 2월 丙辰.

110) 『英祖實錄』 32년 2월 丙辰.

111) 『英祖實錄』 35년 윤6월 辛卯.

112) 『英祖實錄』 35년 윤6월 壬辰; 『英祖實錄』 35년 윤6월 己亥.

이 모두 共議를 청탁한 공격이었다고 생각하던 국왕에게 삼사의 언론기능 자체가 문제로 인식되었다. 이때의 사건 역시 국왕의 지나친 처사를 비판할 정도였다.¹¹³⁾

이러한 상황을 당하여 清流들은 마지막 희망으로 사도세자를 선택한 것처럼 보였다. 노론 이천보·유척기, 소론 박문수·조재호·이종성, 남인 체제공 등 봉당을 초월하여 왕세자의 보호에 나서고 있었다.¹¹⁴⁾ 이들은 점차 權貴化되어가던 蕩平黨에 맞서 새로운 정치를 추구하고자 하였다. 이를 영조는 父黨과 子黨의 출현으로까지 비판하였다.¹¹⁵⁾ 壬午義理는 이 양자를 모두 경계하도록 했던 것으로 보인다.¹¹⁶⁾ 영조는 朋黨의 결성 자체를 죄악시하였다.¹¹⁷⁾

청류들은 영조의 장기집권으로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장수한 강희제가 장자와 황태자를 모두 제거한 것처럼¹¹⁸⁾, 영조도 2인자였던 왕세자의 정치적 성장을 좌시하지 않았다. 마침내 세자는 폐위되었다.¹¹⁹⁾ 왕세자의 폐위와 죽음은 혈육이라도 국왕의 정책에 반하는 이는 누구도 용납하지 않는다는 강력한 표현이었다. 세자 처분 후 復政을 선언하고 마치 戰勝者 처럼 행동하기를 서슴지 않았다.¹²⁰⁾ 사도세자의 사후 영조의 전제화는 가속화되는 듯하다.¹²¹⁾

영조 46년(1769) 淸州人 韓愈가 도끼를 들고 궐문 밖에 당도하여 洪鳳漢을 탄핵하는 상소를 올리자 국왕은 이를 黨人들이 사주한 것이라고 몰아붙였다.¹²²⁾ 사실상 탕평당에 대한 비판이었다. 더욱이 흥봉한은

113) 史臣은 “지난 가을 김시찬의 차자 내용은 매우 절실하였으니, 참으로 권장할 일이지 죄줄 수는 없는 일이다. 임금이 이미 당초의 처분을 잘못하였다”고 하였다. 『英祖實錄』 36년 정월 己未.

114) 김성윤, 앞의 논문, 91-92쪽.

115) 『英祖實錄』 38년 윤5월 戊辰.

116) 최성환, 앞의 논문, 49-64쪽.

117) 『英祖實錄』 7년 11월 辛未.

118) 조너선 D. 스펠스 저, 이준갑 역, 『강희제』(이산, 2001), 206-223쪽.

119) 『英祖實錄』 38년 윤5월 乙亥.

120) 김성윤, 앞의 논문, 89쪽.

121) 영조 40년(1764)에는 당론을 주장하는 상소에 격노하여 자신의 존호인 “體天建極聖功神化”를 지위버리도록 하였다. 이 존호는 탕평이 확립되었음을 만천하에 천명한 휘호였다. 이에 관련자는 모두 유배를 보내고 백관이 만류하여서 간신히 왕의 노여움이 풀렸다. 이렇게까지 극단적인 조치를 취한 데에는 이러한 시도 자체를 탕평을 시험하고자 하는 의도로 받아들였고, 이에 대해서는 어떠한 도전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자세로 생각한다. 『英祖實錄』 40년 11월 乙亥.

122) 『英祖實錄』 46년 3월 戊戌; 『英祖實錄』 46년 3월 己亥.

『嚴隄防裕昆錄』(영조 40)을 통해서 국왕의 壬午義理를 떠받치는 기둥이었다. 게다가 한유는 沈儀之와 함께 朴世采의 黜享까지 도모하였다.¹²³⁾ 朴世采는 탕평의 義理主人으로 추앙되었는데 이를 전면에 나서서 공격한 것이다. 이 사건은 權臣에 대한 통상적인 비판과 소론계 의리에 대한 공격으로도 해석될 여지가 있었다. 그래서 초기에는 유배에서 석방에 이르고 홍봉한은 사직하는 것으로 일단락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한유가 재차 상소를 올리자 영조는 이 사건을 탕평에 대한 정면도전으로 받아들여 모두 正刑하기에 이른다. 상소로 사형을 당한 경우는 매우 이례적이었다.

영조 48년(1772) 金致仁에 대한 극단적인 처벌도 확인된다. 김치인은 老論 金在魯의 아들로서 아버지를 이어 영의정이 되었다. 父子가 모두 영의정이 될 때까지 살았던 임금이니 이제 그보다 늙은 대신은 보기 힘들었다. 한번은 吏曹에서 大司成의 擬望에 3인을 올린 적이 있었다. 이에 국왕은 바로 이조판서와 참의를 경질하고 극히 잘못되었다고 하교했으나 김치인이 전례가 있다고 주장하였다가 왕의 분노를 사게 되었다.¹²⁴⁾ 특정인을 추천했다는 혐의를 피하기 위한 조치로 보이지만, 영조는 좌시하지 않았다.¹²⁵⁾ 급기야 이를 탕평을 파괴하고자 하는 봉당결성죄로 몰면서 역모로 규정하였다.

이는 분명 정상적인 정치 상황이 아니었다. 영조 초반이었다면 대신들의 상소와 대간들이 간쟁이 있었을 상황이었다. 하지만 김치인을 비롯한 대신들은 탄핵의 대상이 되었고, 三司는 이들을 역모로 몰아 유배형을 보내고 이것도 부족해서 處斷할 것을 강변하였다.¹²⁶⁾ 왕의 의도보다도 훨씬 앞서나가는 三司가 되었다. 이제 더 이상 언론기능은 존재하지 않았다. 국왕의 수족에 지나지 않는 아첨꾼들만이 살아남아 있었다. 김치인은 유배를 떠나야 했으며 그의 지인들도 마찬가지로였다.¹²⁷⁾ 다만 수개월이 지나서 영조의 노여움이 풀리자 다시 영상으로 복귀하였다.¹²⁸⁾

123) 『英祖實錄』 46년 3월 丁未.

124) 『英祖實錄』 48년 3월 壬寅; 『英祖實錄』 48년 3월 癸卯.

125) 주요 인사에서 三望을 취하지 않고 長望으로 개정한 것은 탕평정책의 일환이었다. 『英祖實錄』 25년 7월 甲戌; 김성윤, 앞의 논문, 70쪽 재인용.

126) 『英祖實錄』 48년 8월 癸酉.

127) 『英祖實錄』 48년 3월 丙辰.

128) 『英祖實錄』 48년 3월 庚寅.

이제 누구도 왕을 견제할 수 없었다.¹²⁹⁾

그렇다면 이러한 막강해진 국왕의 권력을 국왕 영조는 어떤 곳에 사용했을까? 국왕 영조는 원하는 것이면 그것이 民國에 해가 되지 않는다면 무엇이든 밀어붙였다. 그의 정치 명분은 탕평에 있었고, 요순의 절대적인 권위를 바탕으로 당대 현실을 변화시키고자 노력했다. 요순을 전면에 내세웠기에 백성의 문제에 유달리 집착하였다. 마치 堯舜과 같이 백성을 아낀 聖君이 되는 길만이 자신의 정치명분과 왕위정통성을 높이는 길로 여긴 듯했다.

영조의 전제화된 권력은 요순정치입론의 절정에 달한 모습으로 이해되며, 나라와 백성의 관계만이 주요한 논제로 부각되었다.¹³⁰⁾ 均役의 전면 실시¹³¹⁾, 婢貢의 全減¹³²⁾, 庶孽의 등용¹³³⁾, 『東國文獻備考』 편찬¹³⁴⁾ 등과 같이 백성의 생활과 직·간접적으로 관계된 방대한 사업들은 국왕의

129) 이 사건에 대해서 노론 내 청류들의 결사체인 清明黨에 대한 국왕의 탄압조치로 평가하는 경우도 있으나, 김치인의 행동거지나 당여로 물린 이들의 연결 정도로 볼 때, 정치사건으로 보기는 매우 어렵다고 생각된다.

130) “아! 萬萬 夢想 밖에 望八에 復政하게 되었다. 마음을 民國에 許與하여 그 수고로움을 꺼려하지 않는다. 望八의 임금이 그러한테 하물며 60대의 신하들이겠는가?” 『承政院日記』, 乾隆 30년(영조 41) 5월 甲辰.

○“기운이 비록 이와 같으나 감히 民國에 소홀하겠는가? 기운이 비록 이와 같으나 감히 民國에 소홀하겠는가? 아! 朝臣과 喬木世臣이여, 아! 黎民이여, 아! 옛날부터 내려온 백성들이여, 그 老衰함을 먼저 歎息하노니, 더불어 스스로 勉勵하노라.” 『御製集慶堂編輯』 권3, “噫今年益衰”(영조 42):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편, 『英祖·莊祖文集』(한국정신문화연구원), 71쪽.

○“視事에는 반드시 부지런하여 한 달에 여섯 번 있는 次對를 멈추신 적이 없고, 靜攝하는 중일지라도 民國에 관계되는 狀疏가 있으면 잠시를 지체하지 않고 못 신하를 召接하여 좋은 방도를 물어 편리하게 區劃하시되, 혹은 새벽을 알리는 북소리가 난 뒤에 과하여도 피로한 줄 모르시며, 庶務가 쌓여도 裁決에 어려움이 없어서 마치 칼로 실을 끊는 듯하셨다.” 『英祖實錄』 附錄, 誌文.

131) 김백철, 『조선후기 영조의 탕평정치: 『속대전』의 편찬과 백성의 재인식』(태학사, 2010), 193-238쪽.

132) 영조는 균역법 시행 이후 감궐의 혜택을 외방에 거주하는 公奴婢들에게도 주기 위해서 고심하였다. 이미 노비의 身貢이 양역과 함께 상당 부분 減下된 상황에서 양인과 외방의 공노비의 세액의 차이는 양녀에게는 받지 않는 婢貢의 납세에 큰 비중이 있었다. 女婢의 身貢을 폐지함으로써 양인과 공노비의 경계를 상당 부분 허물어버리게 되었으며, 백성에 대한 무차별적인 은택을 선포해버렸다. 『英祖實錄』 附錄 英祖大王行狀, 英祖 50년 3월 甲午.

133) 영조는 서얼의 허통을 暮年の 사업으로 표현하였으며(『英祖實錄』 48년 11월 丙午), 영조 48-49년대의 서얼허통 조치가 어느 때보다도 가장 강력하였다.

134) 박광용은 『동국문헌비고』의 편찬을 탕평의 결실이자 백성들을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설명하고 있다. 박광용, 「『동국문헌비고』 편찬의 역사적 배경」, 『진단학보』 104(2007), 211-226쪽.

강력한 권위를 바탕으로 이룩된 성과들이었다.

아울러 이러한 절대적인 권력을 바탕으로 영조는 새로운 정국변화를 시도하기에 이른다. 영조 후반 을해옥사 이후 금기시되어왔던 소론계 명분을 회복하는 사업을 꾸준히 시도하였다. 영조 40년(1764) 탕평의 의리주인으로 朴世采를 文廟에 從享하기에 이른다.¹³⁵⁾ 영조 43년(1767) 관작이 추탈되었던 소론 대신 중 하나였던 趙泰億을 임금이 입학할 때 大提學이었음을 들어서 참작해야 한다고 하였으며¹³⁶⁾, 영조 44년(1768) 노골적으로 이광좌, 최석항, 조태억 등 소론 3대신에 대한 복관을 주장하기 시작한다. 왕은 黨이 자신으로부터 盛하게 되었다고 고백하면서 경종과 자신 중 어느 한 사람에게만 충성하는 신료는 있을 수 없다고 강변하였다.¹³⁷⁾ 국왕의 의리명분을 천명하기 위해서는 탕평을 도왔던 핵심세력들을 버려둘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영조는 더욱 강경하게 밀어붙였다. 다음날 국왕이 높은 소리로 하교하면서 친히 최석항, 이광좌, 조태억에게 줄 직첩을 쓰도록 진교하고 이를 방해하는 자는 임금을 모르고 黨만을 아는 자라 극언하였다.¹³⁸⁾ 결국, 영조가 을해옥사 당시 『천의소감』에서 이들의 이름을 모두 못 넣게 한 것은 후일 복관을 의도했기 때문임이 드러나게 되었다. 며칠 후 영조는 “李光佐·趙泰億·崔錫恒 세 사람을 이번에 처분한 후에야 나는 蕩平의 功業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한다”고 극언하여 의지를 관철시켰다.¹³⁹⁾ 이로써 집권초의 탕평을 이끌던 소론에 대한 부채의식도 소론 3대신의 복관을 통해서 일정 정도 해소할 수 있었다. 이를 영조는 ‘大蕩平’이라고 이름하였다. 마치 을해옥사를 建極에 비유하고 이를 최종 완성한다는 듯한 인상마저 지울 수 없었다.¹⁴⁰⁾ 영조는 노론과 소론의 의리를 자신이 원하는 방향에서 결국 약 50여 년 만에 종결지었다.¹⁴¹⁾

따라서 처음 왕위계승의 정당성을 부여받고자 제기된 요순정치상은 어느 순간 탕평군주의 이미지를 벗어나 초월적이고 전제화된 군주의

135) 『英祖實錄』 40년 5월 丙寅.

136) 『英祖實錄』 43년 9월 丁未.

137) 『英祖實錄』 48년 8월 己卯.

138) 『英祖實錄』 43년 8월 癸酉.

139) 『英祖實錄』 48년 11월 甲申.

140) 『英祖實錄』 48년 11월 庚戌.

141) 영조 연간 노론·소론의 주요 대신 처벌 경과(표3).

모습으로 변해 있었다. 이러한 요순정치상의 변화는 국왕과 신료들의 사고방식이 달랐기 때문이다. 국왕은 皇極을 명확히 세우고 모든 의리의 주인이 되는 명실공히 정국주도권을 지닌 전제군주의 위상을 요순에 비정하였다. 그러나 신료들은 그러한 정치명분의 당위에는 찬성하지만, 기본적으로 황극의 의미가 군주의 수양이 더 깊어지는 것으로 모범을 보여야 하는 존재, 그래서 신하들의 심복을 받을 수 있는 군주를 요순에 비정하였다. 사실상 君臣共治의 입장이었다. 이러한 양분된 생각은 영조 초반까지 병립하다가 국왕의 권위가 갈수록 높아지면서 후반대에는 국왕이 그랬던 요순상으로 귀일되어가고 말았다.

그래서 영조의 요순상은 신료들에 대한 이미지와 백성들에 대한 이미지가 전혀 다르게 적용되었다. 곧 국왕은 갈수록 士族들에게는 治統과 道統을 겸비한 君師의 권위를 바탕으로 절대적인 心服을 요구한 전제군주의 모습을 하였고, 백성들에게는 요순의 이상사회를 그리는 한없이 자애로운 군주상을 만들어나가도록 노력하였다. 儒家에서 가장 이상사회로 간주되던 西周나 漢宋의 권위조차 영조는 이미 조선왕조가 뛰어넘고 있다는 자신감을 보일 정도였다.¹⁴²⁾ 그러므로 전제화되는 왕권의 위상은 오직 백성을 명분으로 신료들에게 정당화하고자 하였다. 결과적으로 영조 후반은 국왕의 권위가 최절정에 달하는 시기로 이해된다.

표3-영조 연간 노론·소론의 주요 대신 처벌 경과

연도	내용	주도세력	비고
영조 즉위년	김일경 처벌(急少 제거)	국왕/소론 2대신 (이광좌, 조태억)	急少 처벌 [노론 4대신: 逆] [소론 5대신: 忠]
영조 원년	[을사환국] 노론 4대신(이이명, 김창집, 이견명, 조태제) 복권	노론	노론 4대신: 忠 소론 5대신: 逆
영조 3년	[정미환국] 노론 4대신 관직추탈 / 소론 3대신(유봉취, 조태구, 최석항) 복권	소론	노론 4대신: 逆 소론 5대신: 忠
영조 4년	[무신내 남인, 소론 일부 토벌]	소론	남인, 소론 일부 제거
영조 5년	[기유처분] 반역반중 처분 노론 2대신(이견명, 조태제) 복권	소론 탕평파	노론 4대신: 半逆半忠 소론 5대신: 忠
영조 16년	[경신처분] 노론 4대신 복권	노론	노론 4대신: 忠 소론 5대신: 忠
영조 17년	[신유대환] 국왕형의 소각, 노론 僞詩서건 기록	국왕/소론 /남인/노론	노론 일부 처벌 [노론 4대신: 忠] [소론 5대신: 忠]
영조 22년	소론 3대신(조태구, 최석항, 유봉취) 관직추탈	노론	노론 4대신: 忠 소론 5대신: 3忠 2逆
영조 31년	[을해옥사] '建極' 선언 소론 2대신(유봉취, 조태구) 역률추시 소론 3대신(이광좌, 조태억, 최석항) 관직추탈	국왕/소론/노론	노론 4대신: 忠 소론 5대신: 逆
영조 48년	'大濶平' 소론 3대신(이광좌, 조태억, 최석항) 복권	국왕	노론 4대신: 忠 소론 5대신: 3忠 2逆

142) 『續大典』 『御製題續大典卷首勉勅後昆』(영조 20); 『英祖實錄』 42년 9월 庚午.

V. 맺음말

17세기 봉당정치의 시기에서 18세기 탕평정치기로 이행되는 과정에는 커다란 정국변동이 자리하고 있었다. 여기에는 사회 전반의 운영체제나 정치사상의 인식구조 등 총체적인 패러다임의 변화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거대한 세기간 격변의 한 자리에 국정의 주요 변수는 아무래도 정치지형의 변동이었다.

그간 봉당의 경쟁과 환국 등이 빈번하던 17세기의 정치운영구조는 인재의 폭넓은 敍用을 막고, 국왕의 권위를 실추시켰으며, 국가 차원의 경장에 추진동력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이러한 難局을 해소하기 위한 대안이 탕평이란 이름으로 표방되었다.

결국 신료들은 언제 충역이 엇갈릴지 모르는 불안한 정국에서 실력 본위의 출사를 희망할 수 있게 되었고, 군주 역시 봉당의 명분에 얽매이지 않고 각 봉당을 뛰어넘는 초월자로서의 자신의 권위를 설정할 수 있게 되었다. 이것이 황극탕평론과 요순정치상으로 나타나게 되었다. 그리고 새로운 패러다임 속에서는 당론을 불식시키고 국가의 문물제도를 경장하는 사업에서 실력을 발휘할 수 있는 세상이 되었다. 영조 20년대 국가적인 사업들에서 실력을 발휘하여 성공가도를 달린 홍계희와 같은 이들이 결국 탕평파의 핵심이 되었다.

이제 바야흐로 국왕은 노론 대 소론의 黨論을 뛰어넘는 군주 주도의 탕평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 속에서 정국운영이 이루어지고 있었다고 자부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국왕의 바람도 잠시, 잠복해 있던 봉당 간의 의리논쟁은 재현되었다. 을해년의 옥사로 영조의 분노는 극에 달했다. 소론은 구래의 전통적인 당론에 대한 명분을 잃고서라도 살아남고자 주도적으로 治罪과정에 참여하였고, 노론은 명분을 부여잡고서 더 많은 과실을 탐하였다. 영조는 결코 소론의 근거를 멸할 생각도 노론의 功業을 치장할 생각도 없었다. 오직 이 상황을 자신의 탕평책으로 결론짓고자 했다. 소론 준론에 대한 토역이 탕평으로 탈바꿈하는 순간이었다.

영조는 더 이상 인내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 하나의 인물하면서도 전혀 다른 인물로 보일 정도로 뚜렷이 구분되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 영조와 신료들이 즉위초부터 주창했던 공통의 이상적인 군주상인 堯舜은 이제 더 이상 신하들과 공유할 수 없는 국왕의 전유물로 化하였다.

대규모 토역 후 국왕의 행보는 그 어느 때보다도 단호해지기 시작하고 신료들의 諫言은 거의 무위로 돌아가는 듯하다. 바로 이러한 변화의 과정에 을해옥사의 경과를 정리한 『천의소감』이 있었다. 국왕 영조는 번번이 『천의소감』을 자신의 탕평의 象徴인 양 내세우면서 言路를 봉쇄 하기에 이른다. 이제 누구도 전제화된 국왕을 거스를 수 없었다.

국가적인 경장사업에서는 각 붕당의 인사들을 경쟁시켜 사업의 성과를 독려하였으나, 이제는 신료들의 반대가 심했던 사업들을 하나 둘씩 밀어 붙이기 시작한다. 영조 후반의 경장들은 사실상 신료들의 언로를 봉쇄했기에 가능했던 사업들이었다. 이것이 역설적이게도 국왕 영조가 신료들에 대한 전제왕권의 행사와 백성들에 대한 애정 어린 정책을 힘써 추진한 원동력이 되었다. 조선의 堯舜 英祖는 이제 신료들에게 이 모두가 民國을 위한 것으로 몰아붙이며 명분을 획득하기에 이르렀다.

참 고 문 헌

『肅宗實錄』, 『景宗實錄』, 『英祖實錄』, 『承政院日記』(영조 연간), 『戡亂錄』, 『大訓』, 『闡義昭鑑』, 『自省編』, 『明義錄』, 『續明義錄』, 『御製集慶堂編輯』.

김백철, 「영조대 국왕의리명변서의 편찬과 의미」. 『규장각 소장 왕실자료 해제·해설집』 4, 서울대 규장각, 2005.

_____, 「조선후기 영조대 탕평정치의 이념과 『주례』」. 『한국사론』 51, 서울대 국사학과, 2005.

_____, 「조선후기 영조의 탕평과 그 지향: 국왕·국가·백성의 삼중주」. 한국학중앙연구원 세종국가경영연구소 콜로키움 발표문, 2009.8.18.

_____, 『조선후기 영조의 탕평정치: 『속대전』의 편찬과 백성의 재인식』. 태학사, 2010.

김성윤, 「영조대 중반의 정국과 ‘임오화변」. 『역사와 경계』 43, 부산경남사학회, 2002.

김정자, 「영조말-정조초의 정국과 정치세력의 동향: 영조 46년경-정조원년을 중심으로」. 『조선시대사학보』 44, 조선시대사학회, 2008.

박광용, 「탕평론과 정국의 변화」. 『한국사론』 10, 서울대 국사학과, 1984.

_____, 「영조대 탕평정국과 왕정체제의 정비」. 『한국사 32: 조선후기의 정치』, 국사편찬위원회, 1997.

배혜숙, 「을해옥사의 참여계층에 관한 연구: 니주부 패서사건을 중심으로」. 『백산학보』 40, 백산학회, 1992.

_____, 「조선후기 사회저항집단과 사회변동 연구」. 동국대 사학과 박사학위논문, 1995.

_____, 「영조전반기의 서적정책」. 『규장각』 24, 서울대 규장각, 2001.

원재린, 「영조대 후반 소론·남인계 동향과 탕평론의 추이」. 『역사와현실』 53, 한국역사연구회, 2004.

이경우, 「1740년(영조 16) 이후 영조의 정치 운영」. 『역사와현실』 53, 한국역사연구회, 2004.

이근호, 「영조대 탕평파의 형성과 벌열화」. 『조선시대사학보』 21, 조선시대사학회, 2002.

이상배, 「영조조 윤지패서사건과 정국의 동향」. 『한국사연구』 76, 한국사연구회, 1992.

_____, 『조선후기 정치와 패서』. 국학자료원, 1999.

이정민, 「영조 어제서의 편찬과 의의」. 『한국사론』 51, 서울대 국사학과, 2005.

- 전영진, 「주원장집단과 명초전제주의 문제」. 『경북사학』 21, 경북대 사학과, 1998.
- _____, 「명태조의 정치사상과 군주전제의 성격」. 『중국사연구』 5, 중국사학회, 1999.
- 정만조, 「영조대 초반의 탕평책과 탕평파의 활동: 탕평기반의 성립에 이르기까지」. 『진단학보』 56, 진단학회, 1983.
- _____, 「영조대 중반의 정국과 탕평책의 재정립: 소론탕평에서 노론탕평으로의 전환」. 『역사학보』 111, 역사학회, 1986
- 조너선 D. 스펜스 저, 이준갑 역, 『강희제』. 이산, 2001.
- 조윤선, 「조선후기 영조 31년 을해옥사의 추이와 정치적 의미」. 『한국사학보』 37, 고려사학회, 2009
- 최성환, 「영조대 후반의 탕평정국과 노론 청론의 분화」. 『역사와 현실』 53, 한국역사연구회, 2004
- _____, 「정조대 탕평정국의 군신리 연구」. 서울대 국사학과 박사학위논문, 2009.

국 문 요약

붕당정치기에서 탕평정치기로 이행되는 과정에는 커다란 정국변동이 자리하고 있었다. 영조는 즉위과정에서 수차례의 환국과 변란을 경험하였다. 이에 탕평군주로서 자신의 위상을 정립하여 정통성을 천명하는데 수십 년의 세월이 소요되었다. 이 과정에서 고도의 인내심을 발휘하여 한 걸음 한 걸음을 점진적으로 내딛어 결국 권위를 회복하기에 이른다.

그러나 을해옥사를 기점으로 영조와 신료들이 즉위초부터 주창했던 공통의 이상적인 군주상인 堯舜은 더 이상 공유할 수 없는 국왕의 전유물로 化하였다. 이후 국왕의 행보는 그 어느 때보다도 단호해지기 시작하고 신료들의 諫言은 거의 무위로 돌아가는 듯하다. 바로 이러한 변화의 과정에 을해옥사의 경과를 정리한 『천의소감』이 있었다. 국왕 영조는 번번이 『천의소감』을 자신의 탕평의 象徴인 양 내세우면서 言路를 봉쇄하기에 이른다. 이제 누구도 전제화된 국왕을 거스를 수 없었다.

이제 국가적인 경장에서 신료들의 반대가 심했던 사업들을 하나 둘씩 밀어붙이기 시작한다. 영조 후반의 경장들은 사실상 신료들의 언로를 봉쇄했기에 가능했던 사업들이었다. 이것이 역설적이게도 국왕 영조가 신료들에 대한 전제왕권의 행사와 백성들에 대한 애정 어린 정책을 힘써 추진한 원동력이 되었다. 조선의 堯舜 英祖는 이제 신료들에게 이 모두가 民國을 위한 것으로 몰아붙이며 명분을 획득하기에 이르렀다.

투고일 2010. 10. 4.

수정일 2010. 11. 3.

게재 확정일 2010. 11. 9.

주제어(keyword) 천의소감(*Cheonuisogam*), 영조(King Yeongjo), 탕평(*Tangpyeong*), 요순(*Yao and Shun*), 붕당(*Bungdang*), 민국(*Min-guk*)